## 보수교육규정

제정 1983.04.01 개정 2013.12.14 개정 2015.10.24 개정 1995.04.29 개정 1997.03.29 개정 2016.10.22 개정 1989.07.01 개정 2016.12.10 개정 1996.04.13 개정 2017.02.11 개정 2018.09.15 개정 2000.03.25 개정 2011.02.12 개정 2019.12.14 개정 2012.10.20 개정 2022.09.1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중앙회')의 정관 제3조와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보수교육은 중앙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회는 지회 및 분과학회 또는 중앙회가 인정하는 기타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종류) 보수교육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 ① 종합학술대회
- ② 분과학회 학술대회 및 분과학회 집체교육
- ③ 지회(분회 및 특별분회)의 보수교육
- ④ 온라인 보수교육
- ⑤ 중앙회가 인정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교육

**제4조(계획 및 승인)** ① 중앙회는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보수교육위원회'를 두고 제3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② 보수교육을 위임받은 지회(분회 및 특별분회) 및 분과학회는 '차기연도 보수교육계획서'(별지 제1호) 및 기타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10월 말까지 중앙회로 보고한다.
- ③ 중앙회(보수교육위원회)는 매년 12월 초에 분과학회 및 지회(분회 포함)의 '차기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심의한 후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다.
- ④ 중앙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차기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협회 홈페이지나 병리협보 및 기타 간행물로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 ⑤ 보수교육 실시기관,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집체, 온라인 등), 교육예산 및 피교육자 경비 부담액 등을 작성하여 1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소관과에 제출한다.

**제5조(실시)** ①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은 '보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15일 이내에 '보수교육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중앙회로 보고한다.

- ②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 (별지 제3호)을 교부한다.
- ③ 계획된 보수교육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교육실시 30일 전에 중앙회로 보고하여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④ 중앙회는 제3조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회원의 명단을 통합관리 작성하여 공지한다.
- ⑤ 보수교육 실시기관, 대상자 수, 이수자 수, 보수교육계획 대비 변경사항 등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소관과에 3월 말까지 제출한다.

제6조(문서) 다음 각 호의 보수교육 관련 문서는 3년간 보존한 후 폐기한다.

- ① 보수교육대상자 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 ② 보수교육면제자 명단
- ③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조(교육비) ① 보수교육비는 피교육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원과 비회원의 보수교육비는 차등하여 징수할 수 없다. 단, 비회원의 보수교육비는 해당 보수교육비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 직원 인건비, 교육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③ 보수교육비는 중앙회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시간당 일정금액을 정한다.
- ④ 교육비용은 교재비 및 보수교육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고 중앙회(교육기관) 예산과 분리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 ⑤ 중앙회는 보수교육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시정 조치할 수 있다.
- ⑥ 교육비 환불조건은 보수교육 운영세칙에 근거한다.

**제8조(평가)** ① 중앙회는 제3조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에 참석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 설문지'(별지 제4호)로 보수교육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중앙회는 보수교육 평가 위원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중앙회로부터 보수교육 평가를 위임받은 기관 및 개인은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중앙회로 제출한다.

제9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의료기관 또는 기타 이와 관련된 기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임상병리사를 포함한다)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임상병리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12시간 이상
- 2.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16시간 이상
- 3.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20시간 이상

**제10조(면제)** ① 보건기관·의료기관·검진기관 등, 의료관련기관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면제(유예)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유예)한다.

- 1.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의료기관 또는 기타 이와 관련된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 2. 군 복무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한다)
  - 3. 각 의료기사 등의 해당 전공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 4. 신규 면허 취득자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면제사유가 상실되면 중앙회로 즉시 통보한다.

**제11조(이수시간)** ① 보수교육을 1시간 받은 경우 1시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②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종합학술대회 및 국군의무학교 보수교육은 학술교육 프로그램 참석시간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시간이 인정되며, 최대 8시간 인정한다.
- ③ 협회가 정한 보수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협회가 인정하는 타 관련기관 및 단체의 교육은 연 1시간만을 인정한다. (단,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교육은 1회 1시간씩 최대 2시간을 인정한다.)

**제12조(벌칙)** 연간 8시간 미만의 미이수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 행정 처분을 받도록 적용한다.

**제13조(보칙)** 중앙회는 교육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반영한다. 교육을 위임 받은 기관 및 개인은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및 개선방안을 15일 이내에 중앙회에 보고한다.

제14조(강사비) 종합학술대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